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성30312-144	(전화번호 791-6346)	건설규정 4 조 1항 국 장 전철사항
처리기간	시 장		
시행일자	85. 3		
보존연한	영 구	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	전철	법무담당관 심사관 조 통 주 85.3.26 (30312-17)
	시정계획국	33	
	시정계획국	85.3.26 고시제 203 호	
가안제임자	조근호	85. 3 (김명용)	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조	시 장	1985. 3. 26
제 목	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변경 결정 제안 내 부 결정		
<p>1. 강남구청장 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변경 결정 요청이 있어 우리시 제1차 위원회 제2차 속개 본회의 (85.3.8)에서 상정 심의 가결 되었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요자 합니다.</p>			
<p>결부 : 관계서류 1건 제오한 고 서 안</p>			
<p>서울특별시 고 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변경 결정 고 시</p>			
<p>1. 우리시 도시 계획 시설 (운동장) 을 서울특별시에서 변경 결정 하엿거 도시 계획 법 제 12 조 및 결 관 령 시행령 제 6 조 의 규 정 에 의 하여 이를 고 시 한 다</p>			

2. 광계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 시설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복수실
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바
 1985. 3
 서울특별시청

• 시설 변경 결정 조사

시 설 명	위 치	주 문 (㎡)		비고
		당 초	변 경	
운동장 (정수장)	강남구 신사동 632원대	7,525.5	0	매지



• 변경 결정 도면 : 별첨 도면 도시와 같음 (도면세락)

제 3 안

추진 : 건설부장관
 참조 : 도시 시설 계획 과장
 제목 : 같음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이 별첨과
 같이 변경 결정 고시 하였기 보고 합니다

첨부 : 크시문 사본 및 도면 1부
 제 4 안

수신 : 총무처 장관 (시 : 응보관) 발신 : 서울특별시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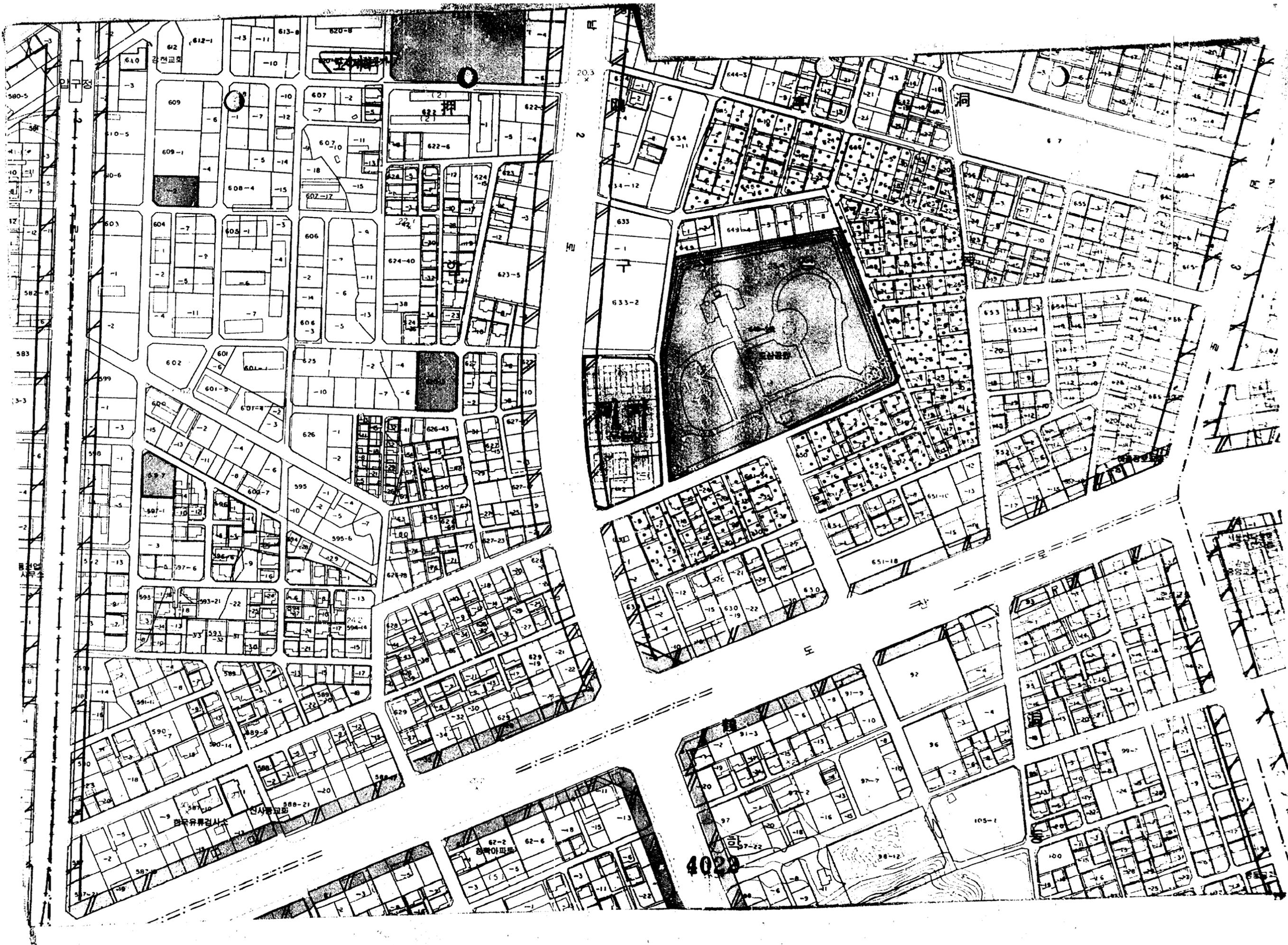
제목 : 관(사)보 게재 의뢰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변경 결정
 에 대한 게재를 별첨과 같이 의뢰 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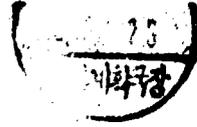
- 가. 게재 구분 : 고시
- 나. 게재 건명 :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변경 결정
- 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
 같은법 시행령 제 1조
- 라. 게재 내용 : 별첨

4020
 1985. 3. 25

첨부 : 고시문 사본 2(1) 부	
제 5 안	
수신 : 강남구청장	1985.3.26
참조 : 도시정비과장	
제목 : 같 음	
1. 도정 442-20578 (83.12.14) 호 및 도정 30314-6673 (85.3.6) 호와 관련임	
2. 위호로 변경 결정 요청한 강남구 신사동 632 일대 운동장 (정구장) 에 위하의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 되었기 통보하시 도면 정리 및 관계하여 통보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 할 것	
첨부 : 고시문 사본 1부	
제 6 안	
수신 : 도시계획과장	발신 : 과장
제목 : 같 음	
1. 우라시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에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 되었기 통보하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각	



'85. 3. 8



도시 계획 위원회 회의록
=====

('85 제1차 위원회 제2차 속개 본회의)



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위원회

1. 일 시 : 85.3.8 15:00-17:30
2. 장 소 : 소회의실
3. 안 건 : 도시계획용도지구 (풍치지구) 변경 결정 의
4. 참석위원

위원장	김진원
위원	이광로
"	오휘영
"	이동배
"	도철용
"	지홍원
"	장지남
"	장현익
"	김인식
"	최종무
"	이영화
"	최상근
"	이동
간사	도시계획과장
서기	도시행정계장 (종합계획계장)



5. 불참위원

위원	김형만
"	신동호
"	김원
"	김안제
"	김경동
"	여홍구
"	박상완

6. 기타참석 : 시설계획과장, 재개발과장, 주택개량과장, 상임기획단연구위원 7명, 농축과실무자

	○ 신정동 85-49일대 도로 토목 확장	가 결
	○ " 406-10 " 도로 신설	"
제26안	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	
	○ 성균관대학교 (명륜동 및 도봉동)	가 결
제27안	도시계획시설(학교, 도로) 결정	
	○ 신림동학교 신설	"
	○ 신림동 도로 신설	"
제28안	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 결정	
	○ 동촌동 사무소	소위원회의위임
제29안	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 변경 결정	
	○ 면목동 공용의청사 폐지	"
제30안	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변경결정	
	○ 신사동운동장 폐지	가 결
제31안	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	
	○ 충무로 4가 시장 결정	가 결
제32안	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 변경결정	
	○ 신월동 여객자동차 정류장 확장	가 결
제33안	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	
	○ 진관내외동 소로망 결정 (127개로선)	소위원회의위임
제34안	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변경 결정	
	○ 방학동 295-1일대 도로신설	가 결
	○ 방학동 163-33 "	"
	○ 창동 259일대 도로변경	가 결
	○ 창동 260-2일대 도로신설	가 결
	○ 창동 260-1 "	"
	○ 번동 490일대 "	"

일 동	동의(가결)
(제28안)	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 결정 ○ 등촌동사무소
시설계획과장	제안설명(심의안에 의함)
이광로위원	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?
일 동	동의(소위원회 위임)
(제29안)	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 변경 결정 ○ 면목동 공용의청사 부지 폐지
시설계획과장	제안설명(심의안에 의함)
이광로위원	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것이 좋겠습니다.
일 동	동의(소위원회 위임)
(제30안)	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변경 결정 ○ 신사동 운동장 폐지
시설계획과장	제안설명(심의안에 의함)
도철용위원	본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된 바 있는것 같습니다.
시설계획과장	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.
이영화위원	폐지해도 좋을것 같습니다.
일 동	동의(가결)
(제31안)	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 ○ 충무로 4가 진양상가 시장 결정
시설계획과장	제안설명(심의안에 의함)
이영화위원	충분한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?
시설계획과장	확보되어있습니다.
도철용위원	현재의 동건물의 용도는?

